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단지현황	단 지 명	○○아파트		
	주 소	울산 북구 △△길 △△		
	세 대 수	19세대	건물 동수	1개동
	사업승인일 (허가일)	0000년 00월 00일	사용검사일 (준공일)	0000년 00월 00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또는 입주자등 동의일)	0000년 00월 00일	연 락 처	010-0000-0000

신 청 내 용

(단위: 원, 부가세포함)

사 업 명	사 업 비			사 업 기 간	
	총 사업비	자체부담금	지원신청금 (보조금)	착수에정일	완료예정일
옥상, 외벽 방수 및 도장 공사	10,000,000원	2,000,000원	8,000,000원	4월 20일	5월 31일
	2개 이상 업체 견적서 중 최저 금액	총사업비에 보조금을 뺀 금액	19세대 이하 :총사업비의 80%	3월 보조금 지원결정 이후	7월 사업완료 이전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월 일	월 일
합 계	원	원	원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 년 1 월 23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용길동**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주택 지원 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또는 입주자등 동의)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된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 동의서(2/3동의) 【서식2】 2. 사업계획서 【서식3】 3.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에 대한 사업자(업체) 견적서(*2개 업체 이상), 내역서 등 4. 사업계획에 따른 현장 관련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사진대장 【서식4】, 도면 등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5】 6. 공동주택 지원 신청 요약서 【서식6】 7.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7】 8. 입주자대표회의(자치기구) 및 관리주체 현황 【서식8】
------	---

공동주택 지원사업 유의사항

[공통사항]

1.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공사)을 수행하여야 하고,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실시는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후에 진행해야 하며, 사전에 집행한 사업(공사)에 대하여 추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3.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은 임의로 증액(위원회 의결 필요)할 수 없으며, 「복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2항 및 "<별표>공동주택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른 '총사업비 중 보조금 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둘 중 적은 금액)
4. 이에, 입찰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줄어드는 경우, 기 결정 통지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보조금(선급금) 교부시 감액된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사업(공사) 완료(준공) 후 정산시 감액된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0조제2항), 다음 연도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취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6. 사업의 취소(또는 축소)로 인하여 반납된 보조금은 차순위 공동주택에 우선지원 할 수 있습니다.
7.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함에 따라 가급적 상반기이내 사업완료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에 한함)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기부를 강요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9. 당해 사업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행위허가(행위신고)를 요하는 사업일 경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허가(신고수리)를 득하여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사업추진 시에 자체부담금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추진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그 조정은 아래 구분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정기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할 날부터 3년을 주기로 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
 - 수시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할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 주기를 넘어 장기간 검토·조정된 바 없는 경우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조정

[서식3]

사업계획서			
단지현황	단 지 명	<i>○○아파트</i>	
	주 소	<i>울산 북구 △△길 △△</i>	
사업(공사) 개요			
사업(공사)명	<i>옥상, 외벽 방수 및 도장 공사</i>		
목적(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건물 노후로 인하여 벽면 및 옥상바닥 균열로 우천시 누수 발생</i> ○ <i>건물 외관상 미관 개선을 위해 도장 필요</i> 		
내용 및 규모	<p style="text-align: center;">※ 사업내용, 규모 등 기술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방수 : 1개동 옥상 및 외벽 전체 방수</i> ○ <i>도장 : 1개동 외벽 전체 도장</i> 		
사업비 개요			
총사업비	총사업비	자체부담금	지원보조금
	<i>10,000,000원</i>	<i>2,000,000원</i>	<i>8,000,000원</i>
사업추진방법 (자금조달계획)	<p style="text-align: center;">※ 자체부담금에 대한 조달계획을 기술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함 (의무관리대상)</i> ○ <i>관리비 적립금으로 충당함</i> ○ <i>세대별 1/n 부담함</i> 		
기타사항	○		

<참고> 1. 2개 이상 사업을 동시에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위 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사업계획서는 사업성격에 적합하게 임의 조정 가능합니다.

《견적서 샘플1》

見 積 書

NO.

●●빌라 귀중

공사명: 건물도색 및 방수공사

201●년 ●●월 ●●일

공급자

상호 : ◆◆기업

대표자성명 : ◆◆◆◆인

주소 : 울산

전화번호 :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합 계 금 액 :		일금			원정 (, ,)		부가세별도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단 가	공 급 가 액	비 고	
1. 옥상방수, 옥상옹벽도색, 건물내외부도색							
옥상 하도	방수수연성	8	말	,000	,000		
옥상 중도	방수수연성	10	말	,000	,000		
옥상 상도	방수수연성	10	말	,000	,000		
내부수성		4	말	,000	,000		
무늬코드		4	말	,000	,000		
외부수성		3	말	,000	,000		
에나멜		2	말	,000	,000		
퍼트		1	말	,000	,000		
청소 및 소모자재		1	식	,000	,000		
페인트, 내외부창문 및 옥상방수인건비		26	명	,000	,,000		
보조공		17	명	,000	,,50,000		
장비	크레인	2	대	,000	,,000,000		
2. 관리이윤		10	%		,,000,000		
					-		
					-		
					-		
					-		
					-		
					-		
					-		
					-		
합 계					,,000,000		

《견적서 샘플2》

見 積 書

공 사 명 : ●●동 ●●빌라 건물내외, 옥상등 방수 및 도색공사

공 사 금 액 : 일금 [redacted] 원 인 [redacted], [redacted],000) VAT별도

2010. 00. 00.

◆ ◆ 企 業
代 表 理 事 ◆ ◆ ◆ 인
TEL:(052) [redacted] FAX:(052) [redacted]



●●빌라 A동 귀하

공사명: ●●동 ●●빌라

건물내외, 옥상등 방수 및 도색공사

명칭	품명규격	수량	단위	직접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내외창틀방수 실리콘작업					-		-		-	-
기존실리콘 제거작업	M/D	8	DAY	■,000	■,000	■,000	1,600,000		-	1,640,000
방수 실리콘작업	M/D	8	DAY	■,000	■,000	■,000	1,600,000		-	1,840,000
장비사용 크레인	5톤	2	대		-		-	■,000	■,000	■,000
2) 내부통로계단 무늬코트시공					-		-		-	-
수성백색페인트	내외부	4	말	■,000	■,000	■,000	800,000		-	■,000
무늬코트시공	내부	2	말	■,000	■,000	■,000	500,000		-	■,000
3) 옥상방수, 옥벽도색	수연성방수				-		-		-	-
바닥청소작업		50	평	■,000	■,000	■,000	■,000		-	■,000
수연성방수작업	하도,중도,상도	50	평	■,000	■,000	■,000	1,250,000		-	2,750,000
옥상옥벽 도색전 청소작업	1000 * 36m	12	평		-	■,000	■,000		-	■,000
옥상옥벽 수연성 방수작업(하,중,상도)	1000 * 36m	12	평	■,000	■,000	■,000	■,000		-	■,000
소모자재 및 경비		1	식	■,000	■,000		-	■,000	■,000	■,000
4) 기타부자재 및 정리경비	1) ~ 3)	3	개	■,000	■,000		-	■,000	■,000	■,000
5) 산재고용	노무비 * %	■	%		-		-		-	■,700
6) 관리이윤	1) ~ 5)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000		■,000		■,000	■,000

[서식4]

현장사진대장			
사 진 구 분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사업계획시[<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완료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시[]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
단 지 현 황	단 지 명	○○아파트	
	주 소	울산 북구 △△길 △△	
추진 사업 명		옥상, 외벽 방수 및 도장 공사	
현장사진			
			
사진설명: ○○아파트 전경		사진설명: 외벽 균열 및 누수	
			
사진설명: 옥상 방수 탈락		사진설명: 옥상 방수 탈락	

1. 2개 이상 사업을 동시에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위 사업별로 현장사진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지원신청서류 중 현장사진대장은 방문·우편 접수와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sirieye@korea.kr)로도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사진구분은 ‘사업계획시’, ‘사업완료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시’ 를 구분하여 표 합니다.

[서식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지방보조사업자

단 지 명	대표자 (회장)	사업자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아파트	홍길동		울산 북구 △△길 △△	010-0000-0000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천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옥상, 외벽 방수 및 도장 공사	10,000 (100%)	8,000 (80%)	2,000 (20%)	2017.5.31.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기관 . 단체명	보조사업명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정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2015	울산 북구청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5,000	4,900	100	0

1. 당해 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동안 구청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 지원 내역을 기재합니다.
2. 보조금 지원 내역 확인은 건축주택과(☎241-8023)로 연락바랍니다.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7. 1. 23.

지방보조사업자 단지명 **○○아파트** 대표(회장) **홍길동** (서명)

[서식6]

공동주택 지원 신청 약속서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기구) 또는 입주자 대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 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 사업추진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약속 합니다.

2017 년 1 월 23 일

제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윤길동**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공동주택 지원 사업추진 유의사항

공통사항

1.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공사)을 수행하여야 하고,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실시는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후에 진행해야 하며, 사전에 집행한 사업(공사)에 대하여 추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3.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은 임의로 증액(위원회 의결 필요)할 수 없으며,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2항 및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른 ‘총사업비 중 보조금 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둘 중 적은 금액)
4. 이에, 입찰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줄어드는 경우, 기 결정 통지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보조금(선급금) 교부시 감액된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사업 완료 후 정산시 감액된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0조제2항), 다음 연도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취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6. 사업의 취소(또는 축소)로 인하여 반납된 보조금은 차순위 공동주택에 우선지원 할 수 있습니다.
7.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함에 따라 가급적 상반기이내 사업완료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공공 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에 한함)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기부를 강요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9. 당해 사업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행위허가(행위신고)를 요하는 사업일 경우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허가(신고수리)를 득하여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사업추진 시에 자체부담금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추진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그 조정은 아래 구분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규칙 제7조제2항)
 - 정기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을 주기로 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
 - 수시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 주기를 넘어 장기간 검토·조정된 바 없는 경우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조정

공동주택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7. 1. 23.

제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홍길동**

○○아파트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홍무** 성명 **장동건** (서명)

○○아파트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김사** 성명 **고연성** (서명)

※ 해당하는 담당자 있는 경우 기재

[서식8]

공동주택단지 및 입주자등 현황					
공동주택 단지현황					
단지명	○○아파트				
세대수 <small>(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기재합니다.)</small>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	19세대	전용면적, 세대수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세대수	세대			
	합계	19세대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 또는 입주자등 현황					
연번	직책	성명	동/호수	연락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 복구청에 신고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및 정원을 기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자치회 또는 금회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입주민 대표 및 대표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입주민 명단을 기재합니다.
1	대표	홍길동	1동 / 101호	010-0000-0000	
2	총무	장동권	1동 / 102호	010-0000-0000	
3	감사	고연정	1동 / 103호	010-0000-0000	
...	
입주자대표회의(자치기구) 정원				00명	
관리주체 현황					
관리회사명	본사 주소	관리소장명	연락처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만 기재합니다.	
○○아파트	울산 북구 △△길 △△	○○○	010-0000-0000		